



생활 속 위험별 보험상품 및 주의사항(2)

글 장태호 KFPA 계몽홍보팀 대리

(지난 호에 이어서)

2. 재산손해(Property loss)

재산손해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재산이 분실, 손상, 파괴되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이와 관련된 위험은 화재, 폭발, 도난, 파손, 풍수재 등 자연재해 등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있다. 보험에 가입하는 재산으로는 개인물품부터 건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유체물부터 부동산권리보험과 같은 권리도 대상이 된다.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상품 중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험은 다음과 같다.

화재보험

도난보험

적하(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재산손해에 관련된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주의할 점은 보험가입 대상과 보험상품이 보상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에 건물(주택)만을 가입했을 때에는 화재사고로 인한 건물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인데, 가입하지 않은 가재도구나 인테리어 시설은 보상이 안되며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주차장의 자동차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주택)의 풍수재, 지진 등의 사고도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 내가 보상받고자 하는 재산을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상품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배상책임손해(Liability loss)

배상책임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무수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은행건물의 누수로 바닥의 물이 흥건하여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아파트의 놀이터 시설물이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을 경우, 식당의 음식물이 상하여 손님이 식중독에 걸린 경우, 내 건물의 주차장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전문직업인이 업무과실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배상책임손해에 관련된 보험상품 중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험은 다음과 같다.

화재보험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화재사고대물배상책임특약)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임차자배상책임보험	주차장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	유도선업자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은 보험의 보상이 타인에게 간다는 점이다. 정확하게는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해야 될 보험계약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타인이 보상을 받는 것이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보험으로 보상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화재가 번져서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단, 상기 표에서와 같이 화재사고에 관련된 배상책임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스폭발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한편, 폭발에 따른 자신의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4. 수익상실손해(Net income loss)

수익상실손해는 대부분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이 중단되어 매출이 감소되면 그 감소분을 수익상실손해라고 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한 휴업손해가 대표적이다. 수익상실손해를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휴업손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보험 계약 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 낙뢰,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인지 기계적, 전기적 원인에 따른 사고인지가 수익상실손해를 보험 가입할 때 결정해야 한다. 이때 결정된 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하여 수익상실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㉞